

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·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9. 5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9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김인문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구립데이케어센터 2개소의 시설 관리·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 구의회 동의를 받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대상시설

연번	시설명(가칭)	위 치	규 모	정원
1	구립 신길5동데이케어센터	도림로80길 6 (신길동 341-3) <신길5제2경로당 2,3층>	245.46㎡ (74평)	21명
2	구립 대림1동데이케어센터	디지털로441 (대림동 899-2) <대림1동복지관 2층>	251.69㎡ (76평)	21명

○

이용대상

- 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~5등급)
-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

○ 서비스 내용

-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
- 급식 및 목욕서비스, 이동서비스
-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

○ 운영방법 :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 운영

○ 소요예산

- 민간위탁금 지원 없음
-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을 경우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 받음

○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령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제출된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2개소이며 먼저 (가칭)신길5동 데이케어센터는 도림로 80길 6에 위치하고 있으며, 연면적 245.46㎡, 정원 21명을 수용할 수 있는

주·야간 보호시설이며,

- (가칭)대림1동 데이케어센터는 디지털로 441에 위치하고 있으며, 연면적 251.69㎡에 정원 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·야간 보호시설임.
- 위 2개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~5등급)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,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와 급식 및 목욕서비스, 이동서비스 등 임.
- 현재 우리구 노인 인구는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49,184명으로 우리구 인구 전체의 14.2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매년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족이나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인구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
※ 노인요양등급자 현황

(2017.7월말 현재, 단위:명)

노인인구수	요양 등급자	시설별 이용자수					미이용자	이용율
		합 계	요양 시설	요양공동 생활가정	주·야간 보호	기타재가 서비스		
52,536	3,159	2,414	191	180	290	1,753	745	76.4%

- 그에 따라 맞춤형 케어 복지서비스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 문제는 본인 스스로는 물론 그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따라서 이런 분들을 신체적, 심리적,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보다 만족스러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케어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,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개별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시설 관리·운영 사무를 위탁운영 하는 것이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에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·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25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민간위탁 목적

- 노후한 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주·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데이케어센터(2개소)를 확충하여 2018년 2월 중 개원 예정인바, 효율적인 시설운동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함.

2. 민간위탁 내용

- 대상시설

연번	시설명(가칭)	위 치	규 모	정원
1	구립 신길5동데이케어센터	도림로80길 6 (신길동 341-3) 〈신길5제2경로당 2,3층〉	245.46㎡ (74평)	21
2	구립 대림1동데이케어센터	디지털로441 (대림동 899-2) 〈대림1동복지관 2층〉	251.69㎡ (76평)	21

- 이용대상

- 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~5등급)
-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

- 서비스 내용

- 취미, 오락, 운동, 언어·작업·물리치료적치료적 훈련 등 여가생활 서비스
- 급식 및 목욕서비스, 이동서비스
-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

3. 민간위탁 추진 일정

- 2017. 8월: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
- 2017. 9월: 일상감사 의뢰
- 2017. 9월: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
- 2017. 10월: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- 2017. 10월: 위·수탁 협약체결
- 2017. 10월: 위·수탁 사무 인수인계

4. 민간위탁 소요 예산

- 민간위탁금 지원 없음
-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을 경우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은 받을 수 있음

5.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

-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 향상
-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
- 후원,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원 개발·연계가 용이하여 나눔 복지 확산 및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
- 조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력운영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, 운영비용 절감에 기여

6. 법적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등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령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